

의안번호	제 614 호
의 결 연 월 일	2021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#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1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1. 1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- 지역 중심의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과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교육감 사무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한편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(안 제5조)

- 1) 공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에 맞게 정비함 (안 제5조 제1호)
- 2)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일부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 (안 제5조 제38호)
- 3)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노동인권교육 및 학생건강검사 규칙 제5조의2 단서규정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 검진기관 선정승인과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 (안 제5조 제39호가~나목)
- 4) 교육장에게 위임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 사무를 알기 쉽게 정비함 (안 제5조 제1호 자목 내지 타목, 안 제5조 제40호, 제41호)
- 5)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유무선망 구축 및 운영과 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 (안 제5조 제41호 바목)

- 6)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를 복무를 관리하는 기관학교로 위임함 (안 제5조 제 31호 다목, 안 제6조 제9호, 안 제7조 제7호)
- 7)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 위임 사무 중 교육장에게 재위임되는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함 (안 제5조 제37호)

**나.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(안 제6조)**

- 1)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를 복무를 관리하는 학교로 위임 (안 제6조 제9호)

**다.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(안 제7조)**

- 1)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를 복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위임 (안 제7조 제7호)

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2) 입법예고: 2020. 11. 27. ~ 2020. 12. 16.
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”를 “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교육과정의”를 “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,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사목 중 “학교수업료와 입학금”을 “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, 제25호 및 제29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1호다목 중 “보수·복무·근무성적평정”을 “보수·복무·겸직 허가·근무성적평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3호 및 제3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- 다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- 라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
- 바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아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항

제5조제38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8. 관할구역 내 공·사립 일반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  - 가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  - 나.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
  - 다. 진로·진학 지도에 관한 사항
  - 라.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
- 39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·관

리에 관한 사항

가. 노동인권교육

나. 「학교건강검사규칙」 제5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 검진기관 선정 승인과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

40.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및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에 관한 지도·감독

41.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
가.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

나.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·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

다. 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 다음의 사항

- 1)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
- 2)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
- 3)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
- 4) 청문
- 5)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
- 6)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

라.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

- 1) 「학교급식법」 제18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
- 2) 「학교급식법」 제19조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의 사무
- 3) 「학교급식법」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
- 4) 「학교급식법」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
- 5)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

마.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

바. 교육정보화에 관한 다음의 사항

- 1) 유·무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2) 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제6조제9호 중 “보수·복무·근무성적평정”을 “보수·복무·겸직허가·근무성적평정”으로 한다.

제7조제7호 중 “보수·복무·근무성적평정”을 “보수·복무·겸직허가·근무성적평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<u>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</u>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이하 “<u>관할학교</u>”라 한다)의 다음 사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</p> <p>가. <u>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<u>평생교육, 그 밖의 교육·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라. <u>학교체육·보건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마. (생략)</p> <p>바. <u>교육·학예의 시설·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사. <u>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아. <u>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</u></p>	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<u>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</u> ----- -----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<u>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라. <u>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<u>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사. <u>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</u> -----</p> <p>아. <u>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</u></p>

현행	개정안
<u>사항</u>	<u>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</u>
<u>· 감독 사항</u>	<u>· 감독 사항</u>
<u>자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</u>	<u>&lt;삭 제&gt;</u>
<u>차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및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에 관한 사항</u>	<u>&lt;삭 제&gt;</u>
<u>카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·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</u>	<u>&lt;삭 제&gt;</u>
<u>타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장학지도 및 컨설팅장학</u>	<u>&lt;삭 제&gt;</u>
<u>2. 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</u>	<u>&lt;삭 제&gt;</u>
<u>3. ~ 24. (생략)</u>	<u>3. ~ 24. (현행과 같음)</u>
<u>25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</u>	<u>&lt;삭 제&gt;</u>



현행	개정안
<p><u>항 및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 다음의 사항</u></p> <p><u>가.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</u></p> <p><u>나.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</u></p> <p><u>다.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</u></p> <p><u>라. 청문</u></p> <p><u>마.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</u></p> <p><u>바.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</u></p> <p>26. 삭제</p> <p>27. (생략)</p> <p>28. 삭제</p> <p><u>29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</u></p> <p><u>가. 「학교급식법」 제18조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평가</u></p> <p><u>나. 「학교급식법」 제19조에 의한 출입·검사·수거 등의 사무</u></p> <p><u>다. 「학교급식법」 제21조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</u></p> <p><u>라. 「학교급식법」 제2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·징수</u></p>	<p>27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마.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</u></p>	
<p>30. (생략)</p>	<p>30. (현행과 같음)</p>
<p>31.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」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</p>	<p>31. ----- ----- -----</p>
<p>가.·나. (생략)</p>	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
<p>다.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<u>보수·복무·근무성적평정</u></p>	<p>다. ----- ----- <u>보수·복무·겸직허가·근무성적평정</u></p>
<p>32. (생략)</p>	<p>3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3. <u>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의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</u>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
<p>34. ~ 36. (생략)</p>	<p>34. ~ 36. (현행과 같음)</p>
<p>37. <u>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</u>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
<p>가. <u>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전보, 순회, 임지 지정, 겸임, 파견, 휴직, 복직, 명예퇴직</u></p>	
<p>나. <u>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직위해제, 의원면직, 경징계(교사에 한함), 포</u></p>	

현행	개정안
<p>상, <u>성과상여금, 공무국외여행</u>  <u>다. 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</u>  <u>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</u>  <u>기승급</u>  <u>라. 사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</u>  <u>감 및 교사의 성과상여금</u>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38. <u>관할구역 내 공·사립 일반고등</u>  <u>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산업수요</u>  <u>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</u>  <u>다음 사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</u>  <u>도·감독</u>  <u>가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</u>  <u>나.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</u>  <u>지도</u>  <u>다. 진로·진학 지도에 관한 사항</u>  <u>라.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</u>  <u>과정 운영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39. <u>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</u>  <u>교·특수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·</u>  <u>관리에 관한 사항</u>  <u>가. 노동인권교육</u>  <u>나. 「학교건강검사규칙」 제5조</u>  <u>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학</u>  <u>생 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</u>  <u>검진기관 선정 승인과 출장</u>  <u>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40.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및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에 관한 지도·감독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41.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</u></p> <p><u>가.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나.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·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다. 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 다음의 사항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)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</u></li> <li><u>2)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</u></li> <li><u>3)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</u></li> <li><u>4) 청문</u></li> <li><u>5)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</u></li> <li><u>6)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</u></li> </ol> <p><u>라.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) 「학교급식법」 제18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</u>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<u>보수·복무·근무성적평정</u></p> <p>10.·11. (생략)</p> <p>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2) 「학교급식법」 제19조에 따른 <u>출입·검사·수거 등의 사무</u></p> <p>3) 「학교급식법」 제21조에 따른 <u>행정처분 등의 요청</u></p> <p>4) 「학교급식법」 제25조에 따른 <u>과태료 부과·징수</u></p> <p>5) <u>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</u></p> <p>마. <u>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바. <u>교육정보화에 관한 다음의 사항</u></p> <p>1) <u>유·무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) <u>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<u>보수·복무·겸직허가·근무성적평정</u></p> <p>10.·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7.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<u>보수·복무</u> <u>· 근무성적평정</u>	7. ----- <u>보수·복무</u> <u>· 겸직허가· 근무성적평정</u>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66802호, 2019. 12. 3, 일부개정]

**제18조(교육감)** ①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·도에 교육감을 둔다.

②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·도를 대표한다.

**제19조(국가행정사무의 위임)** 국가행정사무 중 시·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. 다만,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20조(관장사무)**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2.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3.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4.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
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8. 평생교육, 그 밖의 교육·학예진흥에 관한 사항
9. 학교체육·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10.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
11. 교육·학예의 시설·설비 및 교구(敎具)에 관한 사항
12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13. 특별부과금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
14. 기채(起債)·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
15.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
16.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17. 그 밖에 당해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

**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**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(특별시·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의 장을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

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**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**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** [대통령령 제27667호, 2016. 12. 13., 일부개정]

**제6조(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)**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2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3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4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
5.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
6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항

[전문개정 2010. 6. 29.]

**학교건강검사규칙** [교육부령 제198호, 2020. 1. 9., 일부개정]

**제5조의2(건강검진의 절차 등)**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4.>

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③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4.>



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4.>

1. 학교가 소재한 지역(읍·면·동을 말한다)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
2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
3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

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4.>

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,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·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4.>

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4.>

1.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
2.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

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. <신설 2016. 3. 4., 2020. 1. 9.>  
[본조신설 2006. 1. 10.]

## 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[대통령령 제31047호, 2020. 9. 22, 타법개정]

**제4조(재위임)**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(교육장을 포함한다) 또는 읍·면·동장,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. 16.>

**제22조(교육부 소관)**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0. 2. 18., 2010. 9. 1., 2013. 3. 23.>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(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)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, 정관변경허가, 해산신고의 수리, 그 밖의 지도·감독에 관한 권한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·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 
가.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·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
- 나. 초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- 다.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- 라. 중등학교·초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- 3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·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
  - 가. 유치원의 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  - 나. 유치원의 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- 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·교감자격기준과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·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1항,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1항 및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,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
-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
  - 가. 중등학교·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(1급)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  - 나. 중등학교의 정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3호·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
  - 다. 초등학교의 정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라. 특수학교의 정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  - 마.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  - 바.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- 사. 전문상담교사(1급)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  - 아. 사서교사(1급)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서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- 자.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(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한다)·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  - 차. 보건교사(1급)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  - 카. 영양교사(1급)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- 6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
  - 가. 유치원의 정교사(1급)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  - 나. 유치원의 정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  - 다. 유치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- 7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
- 8. 「고등교육법」 제4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

9. 삭제 <2011. 12. 13.>

10.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6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박탈

11. 「국유재산법」(이하 이 호에서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이 호에서 "령"이라 한다)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·처분(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)

나.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

다.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

라.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·등록, 그 밖의 필요한 조치

마.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전환의 협의

바.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

사.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

아.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

자.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

12. 삭제 <2011. 12. 13.>

1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, 관보 게재 및 통지

14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

15. 삭제 <2011. 1. 24.>

16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(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"시험"이라 한다)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·운송 및 관리

17. 시험응시원서의 접수, 시험의 실시 및 감독,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

18.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

19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

20. 삭제 <2011. 1. 24.>

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(부설학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국공립의 대학·교육대학·종합교원양성대학·원격대학(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·산업대학·전문대학, 국립의 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
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,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

가. 중등학교의 정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
- 다. 사서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1호·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- 라. 보건교사(2급)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- 마. 초등학교의 정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바.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- 사.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(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)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아. 특수학교의 정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1호·제2호·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
- 자. 전문상담교사(2급)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- 차. 영양교사(2급)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 및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,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
4.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
5. 「고등교육법」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. 다만, 국공립의 대학·교육대학·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.
6.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(定數管理)에 대한 승인
7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

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,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국사편찬위원회,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
2.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
3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

④ 교육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,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(2급)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⑥ 교육부장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9조제2항, 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」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⑦ 삭제 <2016. 3. 22.>  
[제목개정 2013. 3. 23.]

□ **교육공무원법** [법률 제16871호, 2020. 1. 29, 일부개정]

**제30조(교감·교사·장학사 등의 임용)**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. <개정 2012. 12. 11., 2013. 3. 23.>

1. 제24조, 제25조, 제26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
2.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

[전문개정 2011. 9. 30.]

**제33조(임용권의 위임 등)**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,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2조제2항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<개정 2012. 1. 26.>

[전문개정 2011. 9. 30.]

□ **교육공무원임용령** [대통령령 제31024호, 2020. 9. 22, 일부개정]

**제3조(임용권의 위임)** ① 대통령은 「교육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. <개정 1985. 8. 12., 1988. 2. 24., 1991. 2. 1., 1991. 4. 23., 1992. 3. 28., 1992. 8. 25., 1994. 2. 17., 1994. 12. 23., 1999. 9. 30., 2001. 1. 29., 2005. 4. 15., 2007. 6. 28., 2008. 2. 29., 2008. 6. 5., 2012. 12. 4., 2013. 3. 23.>

1.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의 휴직·직위해제 및 복직
2.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
3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·겸임·휴직·직위해제 및 복직

3의2. 삭제 <2013. 5. 31.>

4.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(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)

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1992. 8. 25., 1999. 9. 30., 2001. 1. 29., 2003. 3. 11., 2007. 6. 28., 2008. 2. 29., 2012. 12. 4., 2013. 3. 23.>

1. 소속부총장·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
2.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
3. 삭제 <2007. 6. 28.>

4.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

5. 부설학교 교원(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)의 임용

6. 삭제 <2007. 6. 28.>

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.

<신설 1992. 8. 25., 1994. 12. 23., 1999. 9. 30., 2000. 12. 30., 2001. 1. 29., 2003. 3. 11.,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

2. 삭제 <2007. 6. 28.>

3.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

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. <신

설 1995. 5. 29., 1999. 9. 30., 2001. 1. 29., 2003. 3. 11.,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삭제 <2007. 6. 28.>

2.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

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. <개정 1984.

2. 29., 1991. 2. 1., 1991. 4. 23., 1991. 8. 8., 1992. 8. 25., 1994. 2. 17., 1995. 5. 29., 1996. 2. 22., 1997. 2. 25., 1999. 9. 30., 2001. 1. 29., 2007. 6. 28., 2008. 2. 29., 2008. 8. 27., 2011. 10. 25., 2012. 12. 4., 2013. 3. 23.>

1.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

2. 삭제 <1999. 9. 30.>

3. 교감·원감·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

4. 삭제 <2013. 5. 31.>

5. 삭제 <2013. 5. 31.>

6. 삭제 <2007. 6. 28.>

7. 삭제 <2013. 5. 31.>

8. 삭제 <2013. 5. 31.>

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(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)·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1991. 2. 1., 1995. 5. 29., 1999.

9. 30., 2001. 1. 29., 2008. 2. 29., 2011. 9. 6., 2012. 12. 4., 2013. 3. 23.>

1. 소속교사의 임용

2. 소속교감의 승급

[전문개정 1982. 3. 11.]

□ **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** [충청북도조례 제4425호, 2020. 7. 10., 일부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각급 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노동인권”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「경제적·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」 등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.
3. “노동인권교육”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.
4. 삭제 <2020. 7. 10.>
5. 삭제 <2020. 7. 10.>
6. 삭제 <2020. 7. 10.>

**제3조(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)**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.  
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·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**제4조(교육감의 책무)**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, 교원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과 연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10.>

**제9조(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)** ①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10.>  
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, 충청북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대상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10.>